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자료제출·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에 제8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회의의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제11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 및 제1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법조윤리협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윤리협회의의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고 사건수입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조윤리협회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윤리협회의의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회에의 출석 및 진술·설명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9조제2항).

나. 법조윤리협회의의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제89조의10 신설).

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3조제4호 신설).

라. 법조윤리협회의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17조제3항제2호).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홍 윤 식
행정자치부 관
장 (법무부 소관)

●법률 제1458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3호 중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김 재 수
농림축산 관
식품부장관

●법률 제14586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로 한다.